

S10 Table. Special protection elements (Korean Ver.)

특별 보호 요소

- 건강정보 중 재식별 될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,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음

- 정신질환 정보
-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
-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보
-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
-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(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,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)

-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그 사유와 인권을 보호할 추가적인 보호조치* 등의 실시계획을 보고한 뒤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할 수 있음

* (예시) 원 개인정보처리자 내 분석 공간 활용 등

※처리목적, 처리자, 연구방법, 특별한 보호조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